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17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이헌승·김소희·송석준

박준태 • 김선교 • 박덕흠

조경태 • 박성훈 • 박성민

윤상현 • 백종헌 • 김상훈

정연욱 · 유용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한국산업은행법에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실적이 2022년 이후 전무한 상황에서 운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 예정이나, 기금의 운용 종료후 잔여 자산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기금의 잔여 자산 처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의 청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자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운용 기간"을 "운용 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기간 종료 후 기간산업안 정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u>운용</u>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u>운용</u>		
<u>기간</u>) (생 략)	<u>기간 등</u>)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		
	기금 운용 기간 종료 후 기간		
	산업안정기금 운용에 관한 권		
	리・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간산업안정기		
	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		
	시켜야 한다.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		
	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		
	리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u>령으로 정한다.</u>		